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307798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최세학, 이용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진렬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내장용품 및 부품의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관련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인사정보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9. 5.경 피고와 사이에 'D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D 시스템 구축계약(이하 아래의 D구축 기본계약을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고 하고, 아래의 D구축 추가계약을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구축 기본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이하 '을'이라 함)는 을이 제공하는 D구축 및 교육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향후 갑과 을간의 D구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을이 향후 수행할 D구축 및 교육 등 구체적인 범위는 본 계약서를 기초로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추가계약서에서 정한다.

제4조(계약금액)

을의 D구축 및 교육에 대한 대가로 지급될 계약금액과 계약금액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추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해지)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일방 당사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적절한 회답이 나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 ①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추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설비, 장비와 자료의 원본 및 사본 등을 즉시 반환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액도 환불하며, 해지로 인한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 ②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또는 추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지로 인한 발생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D구축 추가 계약서

갑과 을은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D구축 기본계약서에 근거 다음과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한다.

1. D구축의 범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업무별 구분하여 정하며, 각 업무별 상세내역은 첨부한 D구축 제안서로 정하며, 개발 우선순위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 ① 기본코드관리 업무, ② 인사/총무 업무, ③ 회계관리 업무, ④ 영업관리 업무
- ⑤ 구매관리 업무, ⑥ 원가관리 업무, ⑦ 생산관리 업무, ⑧ 물류관리 업무
- ⑨ TCS 업무, ⑩ 인터넷팀 업무, ⑪ CS 업무, ⑫ 수출입 업무

2. D구축 계약기간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

4. 계약금액

공급가액 : 150,000,000원, 부가세 : 15,000,000원, 합계 : 165,000,000원

5. 계약금액 지급 기준

구분	계약금액	지급방법	
		구분	금액 및 지급시기
D구축비용	165,000,000원	계약금	49,500,000원, 계약시
		1차중도금	16,500,000원
		2차중도금	16,500,000원
		3차중도금	16,500,000원
		잔금	66,000,000원, 검수완료 후
합계	165,000,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2019. 5. 9. 계약금으로 49,500,000원, 2019. 9. 2. 1차 중도금으로 16,5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인 2020.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D 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해주었으나, 피고는 연장된 기한까지도 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2020. 10. 31.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31.까지도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가 2020. 10. 31.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서(갑 제8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냈으나,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11. 4.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서를 전달해줌으로써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D 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해주다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최종적으로 2020. 10. 31.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10. 31.까지도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20. 11. 4. 합의 해지되었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 받은 계약금액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0. 10. 31.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바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현재까지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11. 4.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20. 1. 31.까지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20.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의무가 있었다.
- ②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인 2020. 1.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D 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해주었으나, 피고는 연장된 기한까지도 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2020. 10.

31.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31.까지도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최종적으로 2020. 10. 31.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 제1항,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피고에게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것 자체가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는 최종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인 2020. 10. 31.까지 D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지는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 받은 계약금액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20.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